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45호

「국유재산법」 및 「우편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우편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의거 재산(채권)을 압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고금 체납자 재산(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

- 1. 공고사유: 재산(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5. 9. 3. ~ 2025. 9. 16.(14일간)
- 3. 관련근거
 - 가. 「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 등의 징수방법)
 - 나.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다.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4. 공고(공시송달) 대상

구분	체납자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성명(상호)	주민(법인)번호	주소(일부)		
우편료	길*현	84*02*-21*7**3	서울시 성북구	예금채권*	410,620
국유재산 사용료 등	한**상중합**(주)	11*11*-62*6**8	경기도 의정부시		13,432,160
	오*옥	65*50*-24*6**7	경기도 동두천시		29,280,220
	(주)케**리세*	11*11*-62*6**8	서울시 강서구		797,860
	(주)유*온폴*	11*11*-49*4**9	서울시 관악구		6,671,440
	(주)멘*애편*	11*11*-48*9**1	경기도 양주시		43,752,910
	박*서	48*60*-16*6**4	서울시 광진구		2,489,641,320
	신*순	49*11*-26*0**7	서울시 광진구		30,627,230
	배*자	44*22*-26*6**9	전라남도 강진군		56,551,740
	김*관	71*72*-16*4**4	서울시 마포구		13,894,100
	김*태	67*50*-13*0**2	서울시 성동구		8,490,660
	김*래	68*40*-12*8**3	경기도 화성시		17,294,600
	(주)그**스톤오**빌	11*11*-69*7**5	경기도 김포시		73,804,270
	(주)에*엠*인	11*11*-15*4**5	서울시 성북구		1,205,260

- * 7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
- 5. 귀하(사)가 체납한 국고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사)의 예금채권을 직권으로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